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장학기금 수혜대상자를 학업성적 우수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하여 학업성취를 통한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 가난을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기금지급 대상자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3.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1조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중·고등학생(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만,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칙제2조중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명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뛰어쓰기
제5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 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 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제3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 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 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u>중·고등</u> <u>학생(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u> <u>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u> <u>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u>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중·고등</u> <u>학생 및 대학생(다만, 방송통신, 학사</u> <u>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과 국</u> <u>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u> <u>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u> <u>는 제외한다)</u>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로 확대

□ 참 고 자 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장학기금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비용에 사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7. 제3조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단,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05.1.17>

제11조(장학금 지급) ①제5조제7호에 의한 장학생 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학·총장)이 추천한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으로 한다. <개정05.1.17>

다만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장학생의 선발, 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